

「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」 일부개정령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사 유
제3조(적용 대상) 이 영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<u>다음 각 호의</u> 요건을 모두 <u>갖춘</u> 고등학교에 적용한다.	제3조(적용 대상) ----- ----- <u>제1호와 제2호</u> ----- <u>갖춘 고등학교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춘</u> -----.	·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1조의4에 따라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가 군인자녀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모집이 가능한 학교로 추가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
2. 국방부장관이 「군인복지기본법」 제11조의2에 따라 <u>군인자녀</u> 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학교로 인정하는 고등학교일 것	2. ----- ----- <u>군인자녀 등</u> ----- ----- -----	
<u><신 설></u>	3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	

제4조(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) ① <u>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</u> 고등학교(이하 “군인자녀학교”라 한다)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입학정원의 일부를 군인자녀로 모집할 수 있다. ② (생략) ③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8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. 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조(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) ① <u>제3조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고등학교 또는 제3호의 요건을</u>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<u>3. 「군인사법」 제54조의2제1항 1호 또는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</u>	• 군인자녀 모집 대상자에 전사·순직한 군인의 자녀도 포함
---	--	---

<u><신 설></u>	<u>제6조(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의 중단) 교육부장관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1조의4에 따라 군인자녀학교로 지정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운영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</u>	•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군인의 자녀와 그 부모들이 사전 설명없이 군인자녀학교의 운영중단으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협의과정 반영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